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·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. 26.
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. 21. 김영미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. 1. 21.
- 다. 상정일자 :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1. 1. 2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영미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거주하는 아동·여성에게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신설(안 제14조의2)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“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 라고 정하고 있고,
- 2020.5.19 개정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, 제14조의2 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, 제14조의3 (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)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함.
-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도록 정한 것임.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범죄 발생 이전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확보 노력은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